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관련 기능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방부에서 이체받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5. ~ 6.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국립대전현충원)”을 “(국립현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대전현충원장은”을 “국립서울현충원장 및 국립대전현충원장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대전현충원에”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각각”으로, “두며,”를 “두며, 국립서울현충원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8호 중 “국립대전현충원”을 “국립현충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6”을 “별표 5의2”로 한다.

제27조 중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을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중 “디지털소통팀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존속한다”를 “디지털소통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하고, 제4조 중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를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72
일반직 계	72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
전기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
운전서기	1
위생서기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
운전서기보	2
위생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2

열관리운영서기보	2
화공운영서기보	1
농림운영서기보	5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나군(영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학예 담당)	1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7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보훈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총괄과	3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보훈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보훈정책실 현충시설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5)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립대전현충원) ① 국립대전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2조(국립현충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장 및 국립대전현충원장은 각각 ----- -----.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각각 ----- ----- 두며, 국립서울현충원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의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국립묘지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9. 국립현충원----- -----
제20조(지방보훈청) ①·② (생략)	제20조(지방보훈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관내 국립묘지관리소(국립대전현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8. -----국립현충원-----

업무의 지도·확인 9. (생 략) ④ ~ ⑦ (생 략)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부터 별표 19까지와 같다. ② (생 략) 제27조(평가대상 조직) <u>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u>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별표 5의2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평가대상 조직) <u>국가보훈부</u>----- ----- -----.
---	---